



제 429국회 (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면직 및 해촉 사유 추가〉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38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면직 및 해촉 사유 추가	2
2. 개정안 부칙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혁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요건, 기준 등과 함께, 위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신분보장,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면직 및 해촉 사유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면직(免職) 및 해촉(解囑) 사유로
- 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신분보장) ① (생략)	제6조(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신설>	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u>

<u><신 설></u> 2.·3. (생 략)	<u>경우</u> 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5.·6.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신분보장을 위하여 위원이
- ①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가교육위원회법 제7조의 결격사유¹⁾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가교육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도록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면직 및 해촉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면직 및 해촉 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동 사유는 법 시행령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함²⁾.

1) 「국가교육위원회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와 관련된 사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국가 교육의 기본바탕이 되는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등의 해촉사유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나, 비상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위촉되는 경우도 있는데³⁾,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2)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에 따른 직무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이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과 별도로 면직 및 해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경우 민간인인 비상임위원⁴⁾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면직 및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한 위원의 해촉 사유⁵⁾,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④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비상임위원 중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적용된다.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⁶⁾ 등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의 부적합 사유는 객관적 기준 부재로 남용 우려가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형평성 고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 임명권자에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공감되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부적합 사유는 객관적 기준 부재로 임명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의 법령 간 형평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② 충남대학교⁷⁾

-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면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은 상당히 공감하나,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한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법적 논쟁이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때로는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6)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유사 성격 위원회의 위원 면직 및 해촉 사유 비교]

구분		사유
국가 교육 위원회	현행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안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국민권익 위원회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의 당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요구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법」에 따른 당원 -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3년 이내 종사하였던 사람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면직 및 해촉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가 발생하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 그러나,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8)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